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50
----------	-------

발의연월일 : 2026. 6. 15.

발 의 자 : 임오경 · 김 현 · 윤준병  
황명선 · 조계원 · 박홍배  
김재원 · 이수진 · 이개호  
박 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해 입법되어, 범죄자가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권 위반 범죄의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끼치는 경제적 해악이 심각하고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에 의하여 영업이익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수위가 낮아 형량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중대한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특정재산적권리범죄의 가중처벌) ① 「저작권법」 제136조제

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

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併科)

할 수 있다.